Ti amo

청라 더리브 티아모 Casa 오피스텔 분양광고

THE LIV

[청약자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모두 최초 분양광고일(2022.07.07) 기준입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9조의 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2.06.22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인천광역시 거주 1인당 1개 군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 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 · 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2.06.22 광고일과 다름)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서구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개 군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오피스텔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 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제2022-청라관리과-분양신고-4호(2022.06.22)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 허가번호 2022-청라관리과-신축허가-15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입니다.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7-11번지 일대
■ 공급대상
• 대지면적 : 사업부지 10,685.00 ㎡ 중 오피스텔 지분 9,902.3293㎡
• 건축물 연면적 : 91,210.6607㎡(오피스텔 : 84,558.1968㎡)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 3층 ~ 지하 1층(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근린생활시설 등) / 지상 1층(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옥상 조경) / 101동 지상 3층 ~ 지상 19층, 지상 21층 ~ 지상 36층(오피스텔) / 102동 지상 3층 ~ 지상 19층, 지상 21층 ~ 지상 43층(오피스텔) / 103동 지상 3층 ~ 지상 19층, 지상 21층 ~ 지상 37층(오피스텔)
※ 지상 20층(피난안전구역/기계실/연결통로), 옥탑 1층 ~ 옥탑 3층(기계/전기실, 고가수조)
• 금회공급대상 : 지하 3층 ~ 지상 46층 중 분양대상 오피스텔 지상 3층~43층 오피스텔 총 523실
• 주차대수 : 전체 652대 가운데 오피스텔 597대 (근린생활시설 55대)
■ 내진설계 등급 : 본 시설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입니다.
• 내진능력 관련 : 내진능력(MMI 등급) -> Ⅶ-0.203g
■ 입주예정일 : 2025년 11월 24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해당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경제자유구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성장관리권역
■ 분양사업자 겸 시행수탁자 : ㈜하나자산신탁 ■ 시행위탁자 : ㈜청라플러스 ■ 시공업체 : SGC이테크건설㈜
■ 분양대행사 : ㈜레프만홀딩스 ■ 신탁업자 겸 분양대금 관리자 : ㈜하나자산신탁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매도자와의 관계 :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장으로 분양대금 관리자와 매도자가 동일합니다.
■ 건축물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합건축물로서, 인허가(교통영향평가)사항에 따라 주차장 면적은 각 용도별 계획주차대수의 설치면적으로 배분하여 계약면적에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및 공급면적(오피스텔) (단위 : ㎡)

군	타입	공급호실(수)	공급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기타공용	주차장		
1군	76	208	76.6326	31.2848	107.9174	6.0468	36.5355	150.4997	17.6104
2군	84A	208	84.9878	34.3818	119.3696	6.7061	40.5189	166.5946	19.5304
	84B	104	84.9843	34.7071	119.6914	6.7058	40.5173	166.9145	19.5296
3군	211	3	211.6980	85.0978	296.7958	16.7046	100.9296	414.4300	48.6488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인천광역시 서구)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2.06.22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인천광역시 거주 1인당 1개 군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 시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인천광역시 거주지역 당첨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검토 후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청약신청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군	타입	공급호실(수)	공급대상(배정호실수)		비고
			거주자 우선공급(인천광역시)	일반공급(기타지역)	
1군	76	208	41	167	※ 분양신고일(2022.06.22) 주민등록등본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2군	84A	208	41	167	
	84B	104	20	84	
3군	211	3	1	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군	타입	동	라인	층	호실수	총 분양금액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60%) 1차(10%) 2022.09.08	2차(10%) 2023.03.10	3차(10%) 2023.08.10	4차(10%) 2024.03.08	5차(10%) 2024.10.10	6차(10%) 2025.03.10	잔금(30%) 입주지정 기간 내
1군	76	101동, 102동, 103동	1호	3~5층	9	423,100	292,800	29,280	745,180	74,518	74,518	74,518	74,518	74,518	74,518	74,518	223,554
				6~10층	15	429,500	297,300	29,730	756,530	75,653	75,653	75,653	75,653	75,653	75,653	75,653	226,959
				11~15층	15	433,900	300,300	30,030	764,230	76,423	76,423	76,423	76,423	76,423	76,423	76,423	229,269
				16~19층	12	438,300	303,300	30,330	771,930	77,193	77,193	77,193	77,193	77,193	77,193	77,193	231,579
				21~25층	15	442,600	306,300	30,630	779,530	77,953	77,953	77,953	77,953	77,953	77,953	77,953	233,859
				26~30층	15	447,900	310,000	31,000	788,900	78,890	78,890	78,890	78,890	78,890	78,890	78,890	236,670
				31~35층	15	453,600	313,900	31,390	798,890	79,889	79,889	79,889	79,889	79,889	79,889	79,889	239,667
			5호	3~5층	9	421,200	291,500	29,150	741,850	74,185	74,185	74,185	74,185	74,185	74,185	74,185	222,555
				6~10층	15	427,400	295,800	29,580	752,780	75,278	75,278	75,278	75,278	75,278	75,278	75,278	225,834
				11~15층	15	431,800	298,800	29,880	760,480	76,048	76,048	76,048	76,048	76,048	76,048	76,048	228,144
				16~19층	12	436,100	301,800	30,180	768,080	76,808	76,808	76,808	76,808	76,808	76,808	76,808	230,424
				21~25층	15	440,500	304,800	30,480	775,780	77,578	77,578	77,578	77,578	77,578	77,578	77,578	232,734
				26~30층	15	445,700	308,500	30,850	785,050	78,505	78,505	78,505	78,505	78,505	78,505	78,505	235,515
				31~35층	15	451,400	312,400	31,240	795,040	79,504	79,504	79,504	79,504	79,504	79,504	79,504	238,512
		102동	1호	36~40층	5	460,100	318,400	31,840	810,340	81,034	81,034	81,034	81,034	81,034	81,034	81,034	243,102
				41,42층	2	470,200	325,400	32,540	828,140	82,814	82,814	82,814	82,814	82,814	82,814	82,814	248,442
			5호	36~40층	5	457,900	316,900	31,690	806,490	80,649	80,649	80,649	80,649	80,649	80,649	80,649	241,947
				41,42층	2	467,900	323,800	32,380	824,080	82,408	82,408	82,408	82,408	82,408	82,408	82,408	247,224
		103동	1호	36층	1	460,100	318,400	31,840	810,340	81,034	81,034	81,034	81,034	81,034	81,034	81,034	243,102
			5호	36층	1	457,900	316,900	31,690	806,490	80,649	80,649	80,649	80,649	80,649	80,649	80,649	241,947
2군	84A	101동	2호	3~5층	3	471,100	326,000	32,600	829,700	82,970	82,970	82,970	82,970	82,970	82,970	82,970	248,910
				6~10층	5	480,600	332,600	33,260	846,460	84,646	84,646	84,646	84,646	84,646	84,646	84,646	253,938
				11~15층	5	486,500	336,700	33,670	856,870	85,687	85,687	85,687	85,687	85,687	85,687	85,687	257,061
				16~19층	4	492,400	340,800	34,080	867,280	86,728	86,728	86,728	86,728	86,728	86,728	86,728	260,184
				21~25층	5	498,300	344,800	34,480	877,580	87,758	87,758	87,758	87,758	87,758	87,758	87,758	263,274
				26~30층	5	504,200	348,900	34,890	887,990	88,799	88,799	88,799	88,799	88,799	88,799	88,799	266,397
				31~35층	5	510,600	353,400	35,340	899,340	89,934	89,934	89,934	89,934	89,934	89,934	89,934	269,802
			4호	3~5층	3	470,500	325,600	32,560	828,660	82,866	82,866	82,866	82,866	82,866	82,866	82,866	248,598
				6~10층	5	478,200	330,900	33,090	842,190	84,219	84,219	84,219	84,219	84,219	84,219	84,219	252,657
				11~15층	5	484,100	335,000	33,500	852,600	85,260	85,260	85,260	85,260	85,260	85,260	85,260	255,780
				16~19층	4	489,900	339,100	33,910	862,910	86,291	86,291	86,291	86,291	86,291	86,291	86,291	258,873
				21~25층	5	495,800	343,200	34,320	873,320	87,332	87,332	87,332	87,332	87,332	87,332	87,332	261,996
				26~30층	5	501,700	347,200	34,720	883,620	88,362	88,362	88,362	88,362	88,362	88,362	88,362	265,086
				31~35층	5	508,000	351,600	35,160	894,760	89,476	89,476	89,476	89,476	89,476	89,476	89,476	268,428
		102동	2호	3~5층	3	471,100	326,000	32,600	829,700	82,970	82,970	82,970	82,970	82,970	82,970	82,970	248,910
				6~10층	5	480,600	332,600	33,260	846,460	84,646	84,646	84,646	84,646	84,646	84,646	84,646	253,938
				11~15층	5	486,500	336,700	33,670	856,870	85,687	85,687	85,687	85,687	85,687	85,687	85,687	257,061
				16~19층	4	492,400	340,800	34,080	867,280	86,728	86,728	86,728	86,728	86,728	86,728	86,728	260,184
				21~25층	5	498,300	344,800	34,480	877,580	87,758	87,758	87,758	87,758	87,758	87,758	87,758	263,274
				26~30층	5	504,200	348,900	34,890	887,990	88,799	88,799	88,799	88,799	88,799	88,799	88,799	266,397
				31~35층	5	510,600	353,400	35,340	899,340	89,934	89,934	89,934	89,934	89,934	89,934	89,934	269,802
				36~40층	5	518,000	358,500	35,850	912,350	91,235	91,235	91,235	91,235	91,235	91,235	91,235	273,705
				41,42층	2	527,800	365,300	36,530	929,630	92,963	92,963	92,963	92,963	92,963	92,963	92,963	278,889
			4호	3~5층	3	470,500	325,600	32,560	828,660	82,866	82,866	82,866	82,866	82,866	82,866	82,866	248,598
				6~10층	5	478,200	330,900	33,090	842,190	84,219	84,219	84,219	84,219	84,219	84,219	84,219	252,657
				11~15층	5	484,100	335,000	33,500	852,600	85,260	85,260	85,260	85,260	85,260	85,260	85,260	255,780
				16~19층	4	489,900	339,100	33,910	862,910	86,291	86,291	86,291	86,291	86,291	86,291	86,291	258,873
				21~25층	5	495,800	343,200	34,320	873,320	87,332	87,332	87,332	87,332	87,332	87,332	87,332	261,996
				26~30층	5	501,700	347,200	34,720	883,620	88,362	88,362	88,362	88,362	88,362	88,362	88,362	265,086
				31~35층	5	508,000	351,600	35,160	894,760	89,476	89,476	89,476	89,476	89,476	89,476	89,476	268,428
				36~40층	5	515,400	356,700	35,670	907,770	90,777	90,777	90,777	90,777	90,777	90,777	90,777	272,331
				41~42층	2	525,200	363,500	36,350	925,050	92,505	92,505	92,505	92,505	92,505	92,505	92,505	277,515
		103동	2호	3~5층	3	471,100	326,000	32,600	829,700	82,970	82,970	82,970	82,970	82,970	82,970	82,970	248,910
				6~10층	5	480,600	332,600	33,260	846,460	84,646	84,646	84,646	84,646	84,646	84,646	84,646	253,938
				11~15층	5	486,500	336,700	33,670	856,870	85,687	85,687	85,687	85,687	85,687	85,687	85,687	257,061
				16~19층	4	492,400	340,800	34,080	867,280	86,728	86,728	86,728	86,728	86,728	86,728	86,728	260,184
				21~25층	5	498,300	344,800	34,480	877,580	87,758	87,758	87,758	87,758	87,758	87,758	87,758	263,274
				26~30층	5	504,200	348,900	34,890	887,990	88,799	88,799	88,799	88,799	88,799	88,799	88,799	266,397
				31~35층	5	510,600	353,400	35,340	899,340	89,934	89,934	89,934	89,934	89,934	89,934	89,934	269,802
				36층	1	518,000	358,500	35,850	912,350	91,235	91,235	91,235	91,235	91,235	91,235	91,235	273,705
			4호	3~5층	3	470,500	325,600	32,560	828,660	82,866	82,866	82,866	82,866	82,866	82,866	82,866	248,598
				6~10층	5	478,200	330,900	33,090	842,190	84,219	84,219	84,219	84,219	84,219	84,219	84,219	252,657
				11~15층	5	484,100	335,000	33,500	852,600	85,260	85,260	85,260	85,260	85,260	85,260	85,260	255,780
				16~19층	4	489,900	339,100	33,910	862,910	86,291	86,291	86,291	86,291	86,291	86,291	86,291	258,873
				21~25층	5	495,800	343,200	34,320	873,320	87,332	87,332	87,332	87,332	87,332	87,332	87,332	261,996
				26~30층	5	501,700	347,200	34,720	883,620	88,362	88,362	88,362	88,362	88,362	88,362	88,362	265,086
				31~35층	5	508,000	351,600	35,160	894,760	89,476	89,476	89,476	89,476	89,476	89,476	89,476	268,428
				36층	1	515,400	356,700	35,670	907,770	90,777	90,777	90,777	90,777	90,777	90,777	90,777	272,331
	84B	101동	3호	3~5층	3	469,900	325,200	32,520	827,620	82,762	82,762	82,762	82,762	82,762	82,762	82,762	248,286
				6~10층	5	477,900	330,700	33,070	841,670	84,167	84,167	84,167	84,167	84,167	84,167	84,167	252,501
				11~15층	5	483,700	334,800	33,480	851,980	85,198	85,198	85,198	85,198	85,198	85,198	85,198	255,594
				16~19층	4	489,600	338,900	33,890	862,390	86,239	86,239	86,239	86,239	86,239	86,239	86,239	258,717
				21~25층	5	495,500	342,900	34,290	872,690	87,269	87,269	87,269	87,269	87,269	87,269	87,269	261,807
				26~30층	5	501,300	347,000	34,700	883,000	88,300	88,300	88,300	88,300	88,300	88,300	88,300	264,900
				31~35층	5	507,800	351,400	35,140	894,340	89,434	89,434	89,434	89,434	89,434	89,434	89,434	268,302
		102동	3호	3~5층	3	469,900	325,200	32,520	827,620	82,762	82,762	82,762	82,762	82,762	82,762	82,762	248,286
				6~10층	5	477,900	330,700	33,070	841,670	84,167	84,167	84,167	84,167	84,167	84,167	84,167	252,501
				11~15층	5	483,700	334,800	33,480	851,980	85,198	85,198	85,198	85,198	85,198	85,198	85,198	255,594
				16~19층	4	489,600	338,900	33,890	862,390	86,239	86,239	86,239	86,239	86,239	86,239	86,239	258,717
				21~25층	5	495,500	342,900	34,290	872,690	87,269	87,269	87,269	87,269	87,269	87,269	87,269	261,807
				26~30층	5	501,300	347,000	34,700	883,000	88,300	88,300	88,300	88,300	88,300	88,300	88,300	264,900
				31~35층	5	507,800	351,400	35,140	894,340	89,434	89,434	89,434	89,434	89,434	89,434	89,434	268,302
				36~40층	5	515,100	356,500	35,650	907,250	90,725	90,725	90,725	90,725	90,725	90,725	90,725	272,175
				41,42층	2	524,800	363,200	36,320	924,320	92,432	92,432	92,432	92,432	92,432	92,432	92,432	277,296
		103동	3호	3~5층	3	469,900	325,200	32,520	827,620	82,762	82,762	82,762	82,762	82,762	82,762	82,762	248,286
				6~10층	5	477,900	330,700	33,070	841,670	84,167	84,167	84,167	84,167	84,167	84,167	84,167	252,501
				11~15층	5	483,700	334,800	33,480	851,980	85,198	85,198	85,198	85,198	85,198	85,198	85,198	255,594
				16~19층	4	489,600	338,900	33,890	862,390	86,239	86,239	86,239	86,239	86,239	86,239	86,239	258,717
				21~25층	5	495,500	342,900	34,290	872,690	87,269	87,269	87,269	87,269	87,269	87,269	87,269	261,807
				26~30층	5	501,300	347,000	34,700	883,000	88,300	88,300	88,300	88,300	88,300	88,300	88,300	264,900
				31~35층	5	507,800	351,400	35,140	894,340	89,434	89,434	89,434	89,434	89,434	89,434	89,434	268,302
				36층	1	515,100	356,500	35,650	907,250	90,725	90,725	90,725	90,725	90,725	90,725	90,725	272,175
3군	211	101동	1호	36층	1	1,710,000	1,190,000	119,000	3,019,000	301,900	301,900	301,900	301,900	301,900	301,900	301,900	905,700
		102동	1호	43층	1	1,900,000	1,310,000	131,000	3,341,000	334,100	334,100	334,100	334,100	334,100	334,100	334,100	1,002,300
		103동	1호	37층	1	1,600,000	1,110,000	111,000	2,821,000	282,100	282,100	282,100	282,100	282,100	282,100	282,100	846,300

■ 공통사항
• 상기 분양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 미포함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는 계약시 수분양자가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함을 인지합니다.

세액	수입인지가격
기재 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0,000원
기재 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350,000원

• 금번 오피스텔 공급대상은 523실이 3개 군 4개의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약 신청 전 홈페이지와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기준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은 공용면적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각 실별로 상기 면적에 대한 금액이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대지지분을 실별 전용면적 비율로 균등 배분한 것입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잔금납부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잔금 납부 시 정산할 예정입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 등 소유권 이전비용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오피스텔 계약자의 경우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보행공간에 대하여 계약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명칭은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청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동법 제3조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Ⅱ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의거하여 분양호실 20%를 분양신고일(2022.06.22 광고일과 다름)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우선 선정합니다.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청약해야 우선분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단,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 · 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분양광고일(2022.07.07)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개 군 접수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개 군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업관계자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 · 호수 결정방법
일 시	2022년 07월 13일(수) 1일간 (청약홈은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2022년 07월 18일(월) 16:00시 이후	2022년 07월 20일(수) ~ 07월 21일(목) 2일간 (10:00~18: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군)별 무작위 결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라 더리브 티아모 까사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6)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KB국민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오피스텔	○	○	○	○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군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군 공통	3,000,000원 (금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합니다.(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국민은행 전 지점)

구분		구 비 사 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국민은행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신분증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국민은행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국민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관계자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 등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2.07.0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관계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배치구조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가 자납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당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및 오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동 · 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2년 07월 18일(월) 16:00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 · 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군 내에서 타입 · 동 · 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합니다.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부완료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 후 계약 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 관련법령에 의거 잔여 호실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정당첨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사업 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공급 단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 불 방 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됩니다.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됩니다.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됩니다.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합니다.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관계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2년 07월 20일(수) ~ 07월 21일(목)	10:00~18:00	청라 더리브 티아모 까사 견본주택(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6)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국민은행	393301-04-092487	㈜하나자산신탁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 분양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계약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 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분양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계약시	① 청약신청 접수증 ②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주민등록초본 1통 ⑤ 계약자 인감도장 ⑥ 인감 증명서 2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용도:오피스텔 계약용) ⑦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⑧ 수입인지 [구입처 : 정부수입인지 홈페이지(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법인 계약시	① 청약신청 접수증 ②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③ 법인등기부등본 1통 및 사업자등록증 1통 ④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⑤ 법인인감증명서 2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⑥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직원 및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⑦ 수입인지 [구입처 : 정부수입인지 홈페이지(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제 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인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①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②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비치)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2.07.0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며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되,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으로 단지 내 판매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 · 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중도금 대출은 시행위탁자에서 알선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고, 정부의 부동산 관련정책(대출제한 등) 및 관련법률의 제정 및 개정,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이의를 사업관계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불가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단,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거나 대출불가로 인한 자납 또는 입주 지정 기간 전에 받은 중도금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시행위탁자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그 금액을 시행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 중도금은 전타입 총 분양가의 60%이내에서 무이자 적용됩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지정일의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부담하며, 그 이후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행은 시행위탁자와 금융기관의 협약내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위탁자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계약자별 은행을 임의지정 할 수 있고 계약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본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제반서류 발급비용, 인지대, 대출보증수수료 등)으로 대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대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각각의 중도금 약정일에 맞추어 직접 입금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1인 최대 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및 법인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대출 불가시 직접 자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상환 약정일 이후, 미상환시 개인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Ⅳ 선택품목 안내

■ 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오피스텔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품 목	기본형	유상옵션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계약금 10% (계약시)	잔금 90% (입주지정기간 내)	비 고
76	아트월 표면재	포셀린타일 (600*600)	세라믹타일 (1200*1200)	7,626,000	762,600	6,863,400	
	수납강화형 주방가구	ㄴ자 기본주방 상/하부장(DADA)+ 실내 도어(목문형)	ㄴ자 기본주방 상/하부장(DADA)+ 팬트리 2개소(국내제작)	3,150,000	315,000	2,835,000	
84A	아트월 표면재	포셀린타일 (600*600)	세라믹타일 (1200*1200)	8,441,000	844,100	7,596,900	
	주방 및 조명 특화	ㄷ자 주방 아일랜드(DADA) +주방팬트리도어(국내제작) +시스템선반(국내제작) +팬트리조명+식탁 직부등 +거실 우물 천장	[와이드형 주방가구 +확장형 주방 우물 천장 및 간접조명] 독립형 아일랜드(DADA) +장식장(국내제작)+식탁팬던트조명 +'거실-주방' 확장형 우물천장/간접조명 +원형매입등(디밍)	6,900,000	690,000	6,210,000	
84B	아트월 표면재	포셀린타일 (600*600)	세라믹타일 (1200*1200)	8,441,000	844,100	7,596,900	
	주방 및 조명 특화	아일랜드 기본형(DADA) +식탁직부조명	[대형 주방 아일랜드+간접조명] 대형 아일랜드(DADA) +무늬목 바테이블(국내제작) +'거실-주방' 우물천장의 간접조명 +식탁직부조명+원형매입등(디밍)	11,703,000	1,170,300	10,532,700	
	순환형 고급 드레스룸	[드레스룸-복도팬트리 분리형] 실크벽지+일반형 시스템가구 +가구도어+강마루	[드레스룸-복도팬트리 통합형] 벽판넬+벽부형 시스템가구 +슬라이딩도어+바닥타일	3,405,000	340,500	3,064,500	

※ 유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 주방가구 등의 가구 뒷면 및 바닥, 천정에는 바닥마감재 및 벽지, 천정지 등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 부위가 발생(호실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1(거실) 아트월(유상옵션 포함)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벽체에 고정할 시에는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1(거실)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유상옵션 포함) 부위는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쿨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각종가구 손잡이, 하드웨어, 레일, 악세서리, 브랜드 라벨 등의 디테일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가구의 길이, 디자인,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순환형 고급 드레스룸 유상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바닥타일과 강마루 사이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될 수 있으며, 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84A, 84B 주방 및 조명특화 유상옵션은 분리하여 옵션 선택이 안되며, 유상옵션 미 선택시 조명기구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호실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 내 순환형 고급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는 시간경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급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벽과 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급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무상선택옵션
• 실3, 4 침실통합형 무상선택옵션 선택 시, 실3 벽지가 시공되며 동급사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품목	타입	[기본형] 옵션 미선택시	옵션 선택형 품목	금액	비고
가변형 벽체	84A 84B	침실분리형 (실3,4 사이 벽체)	침실통합형 (실3,4 사이 벽체 미설치)	무상	

• 무상옵션 및 선택에 따라 설치되는 등기구의 위치 및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피스텔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선택품목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유상 선택품목 납부계좌 (기타품목)	신한은행	100-031-153810	에스지씨이테크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유의사항
• 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 대금은 오피스텔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조명기구,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공급금액은 선택에 따라 미설치되는 기본제공 가전, 가구, 마감재 등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은 오피스텔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계약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경우 "병"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은 본 오피스텔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오피스텔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병"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병"은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병"의 귀책으로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병"은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은 본 오피스텔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오피스텔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병"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유/무상옵션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호실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Ⅴ 기타 계약자안내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인천광역시 서구)내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나기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함.)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 · 채무 관계 및 그 책임은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25년 11월 24일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항 제10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사항은 본 분양광고 여타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건축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청라플러스, 토지를 수탁 받은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신탁회사) ㈜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에스지씨이테크건설㈜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①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은 신탁 물건에 대한 분양계약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청라플러스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②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청라플러스과 수탁자 ㈜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 · 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청라플러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 · 의무도 공급계약서에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청라플러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③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④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청라플러스와 시공사인 에스지씨이테크건설(주)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⑤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⑥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분양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Ⅵ 기타 유의사항

■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면 적	• 본 모집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합니다. • 분양계약서 및 분양신청서의 [타입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타입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타입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타입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며, 소수점 5째 자리에서 절사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단수정리 등에 따른 오차면적은 일부 호실에 할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호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총 대지지분을 각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별도 경계구획 및 구분 등이 불가하여 이를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합니다. • 오피스텔 호실의 공용면적(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단, 벽체공용면적은 제외)은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합니다. • 각 면적 배분은 관련 법령 및 유사 법령의 기준으로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호실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조건에 따라 사업부지 내 일부는 도로 확폭 및 차량 진출입 가감속차로 사용 또는 기부채납되어 사업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 분	내 용
계약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의 공급가격은 각 호실의 타입 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중도금 대출,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당첨 및 계약이후 개인정보 변경 및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초본 포함)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이 오피스텔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부동산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사업주체+계약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하기 절차 미이행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외국인이 상속 · 경매 등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견본유니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사용상 편의를 위하여 변경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협의 및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분양대행사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대행사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 시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 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전용공간과 연관된 공용부분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하1층 주차구획(6대)에는 CS센터 운영을 위한 면적 사용에 동의 하며, 사용기간은 입주기간 종료후 3년까지로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공사도중) 전 호실내 무단출입 및 호실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인허가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와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초등학생은 인근학교로 배치 가능하며, 그 외 사항은 계약 전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통학로 내에 횡단보도가 많아 도보통학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용도	• 본 단지는 용도별로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 계획(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은 추후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단지 내 타용도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단지 내	• 단지 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라인별 차이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상이하거나 침해당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호실 내외 및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 포함)의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 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에서 분양을 진행하거나 완료한 오피스텔의 마감사양, 설치된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견본유니트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 ·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쓰레기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 또는 타용도의 건물의 외장 또는 인근에는 해당 시설의 실외기, 환기 및 배기팬, 냉각탑 등의 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주동 및 호실은 노출,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호실은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공사용 견본호실(목업)로 이용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측벽 등에 표기 또는 설치되는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 품질 및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각 용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조경 및 공용시설에 장비 반입구, 한전수위 전기설비 설치 공간(한전패드), 가스 관련 시설, 맨홀, 우수조, 실외기, 급배기구 및 쓰레기 수거장, 재활용 창고(분리수거 공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냄새, 진동, 소음, 해충,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지상 1층 외부공간은 조경시설 등으로 소음, 분진,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시 소음 측정으로 인해 도로에 면한 면 또는 일부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편의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또는 심의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내부, 엘리베이터홀, 오피스텔 로비, 동출입구에는 CCTV카메라가 설치되며, 건축법 범죄예방설계기준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색채, 외장재료, 측면디자인, 창호형태 및 색채 등), 오피스텔 단지명 사인물, 동현관, 난간의 디테일, DA(Dry Area)등 외부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외	• 사전에 사업부지 내 · 외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그에 따른 구역 내 · 외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관청의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 취소 ·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 취소 ·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신축 · 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배치구조, 오피스텔 동별, 향별, 층별, 라인별 위치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 간섭, 조망 간섭, 전자파 발생, 전자기장애, 분진 발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또는 해당 민원으로 인한 행정관청의 공사중단, 권고 등으로 시공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조정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본 건물의 상업시설로 인하여 주말 교통 혼잡 및 소음과 통행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풍압 및 풍량으로 인한 소음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감재	•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 포함)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광고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층간소음완충재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장 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단, 일부 수입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KS기준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제품 생산기준이 KS기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타일 나누기(현관, 욕실, 다용도실 등 타일이 시공된 부위)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일자, 생산공장(지)에 따라 이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표면결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벽 장식물로 인해 침실과 거실의 조망/채광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의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호실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전기 · 통신 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 사양,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각종 기구(조명/배선기구/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위치 및 재질, 사양이 계약자에게 개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유니트에 시공된 마감자재 중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마감재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 견본유니트의 옵션품목은 별도 계약사항으로 기본형 호실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한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유니트에 제시된 창호(유리, 프레임)의 강도는 본 공사 시 층수 및 위치에 따라 바람에 의한 영향의 차이로 인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유니트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유니트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옵션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유니트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 및 양지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유니트에 미건립 호실의 경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유니트 건립호실과 다른 사항은 견본유니트에 비치된 설계도서, 카탈로그 또는 모형 등을 확인 및 숙지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유니트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 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 또는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견본유니트 내 건립호실,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및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판매시설 등의 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의 동의 없이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유니트 내에서 전기, 설비, 조명, 주방가구, 조경, 조명, 수전 등 내부 시공사양은 본 공사에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견본유니트 내 설치된 조명 및 가구, 전시품 등은 본 공사와 무관한 별도 시공 대상입니다. • 견본유니트에 설치된 천장의 조명,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게 설치됩니다.(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용 소방시설임) • 견본유니트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연출용 설비 배관, 배선포함),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유니트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유니트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유니트(홈페이지 견본 유니트 vr포함)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입주 전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양홍보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유니트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형 및 카탈로그에 표현된 조감도, 투시도, 평면도, 배치도, 조명, 조경, 시설물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인허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탈로그 및 견본유니트에 표현된 단위호실 평면 등에 표현된 실의 규모 관련 치수 또는 면적 등은 제작 시에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오피스텔동 및 부대복리동, 단지 외부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 주출입구에 설치되는 문주의 형태, 외벽의 줄눈 및 리브 등은 본 공사시 시공성 및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오피스텔 외벽 색채는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주차장 출입경사로 상부의 캐노피의 설치여부 및 형태 등은 면적산정 등 인허가 사항과 본 공사시 시공성 및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미설치 또는 일부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유니트(분양사업장 포함)에 설치된 배치도, 평면도 및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옥외시설물(부대시설, 드라이에어리어(DA), 한전패드,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레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DA, 한전패드,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유니트,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 완충녹지, 공원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모형 등을 기준하여 계약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유니트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동일 또는 동가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임의 변경 시공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 유의사항 (단지 내 · 외부 관련사항)

구 분		내 용
인허가 및 관련법규		•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2021년 12월 21일 건축심의 완료(2021년 11월 24일 접수)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 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접수일 또는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 준공 전 또는 후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면적의 변경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단지 내 · 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들의 요청, 입면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가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녹색건축(예비)인증 대상이 아닌 건축물입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건축물입니다.
면적	지분	• 본 단지는 복합시설로 각 용도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복합시설로 각 용도별 대지지분은 용도별 시설면적(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별도 경계구획 및 구분 등이 불가하여 이를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이며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적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본 단지는 복합시설로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오피스텔 호실별(근린생활시설 제외)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복합시설로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각 용도별 계획주차대수의 설치면적으로 배분되었으며, 통행의 방해 등 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개별적인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의 전용면적에는 다용도실 면적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 실 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타	• 본 단지는 인허가 협의 결과 또는 현장 공사 여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전용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사항은 수분양자의 동의 또는 고지를 진행 후 평면 및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 및 성능 개선 등을 위해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면적 및 서비스면적, 내부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분양자의 실제 공급면적(벽체공용면적, 계단실면적, 피난안전구역, 지상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포함), 계약면적(지하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포함), 대지지분 및 전용률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공용부 면적(계단실, 주차장, 지하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설비공간 등)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서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유시설물과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오피스텔 입주자는 계약면적 외 상업시설은 별도의 공급대상이므로 계약자는 오피스텔 공급면적 외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이용 계획은 입실 후 관리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는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구조 및 미관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건물의 공용면적 및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시공시 마감 및 단열재 두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구 설치시 반드시 실측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커뮤니티시설, 설비 공간 등 각종 공용부 면적 등은 실시공시 현장 여건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	단지	• 본 단지는 건축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배치 및 건물 입면의 장식, 주변 단지의 신축,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과 사생활 침해가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시 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 도로 및 조경선, 조경공사, 건물외벽 마감공사 등을 포함한 단지 공사,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인허가 과정이나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실시 시공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각종 평가(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내용 중 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 단지의 건축허가(건축계획)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 등은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여부 또는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별도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됩니다.) • 인천도시가스 협의에 따라 각 상가 전면 및 일부 장소에 LPG탱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위호실	• 오피스텔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구조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과 구조부재의(기둥, 보 등) 크기, 위치,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여건에 따라 콘센트, 조명스위치 등의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분양가에 포함되는 항목(가구, 각종 등기구, 전자제품 등)은 개인적인 요구 및 취향에 따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선택옵션 여부에 따라 본 공사시 감지기,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창호 및 유리의 사양 및 크기, 개폐 방식, 개폐 방향, 브랜드, 하드웨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 등	• 외부 벽체에는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두께 및 현장여건에 따라 주동 저층부 외부 마감재(석재 등) 적용 구간에 해당하는 호실의 창호사이즈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도시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가스관련시설 및 전기변압시설 등의 시설물이 입주자 동의 없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은 건물 외부에 설치되며, 설치 계획에 따라 내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 시설 등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평면, 입면, 구조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오피스텔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 확보를 위해 일부 기둥, 보와 같은 구조체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용 D/A, 제연휀룸 D/A,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의 지상 돌출물 및 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기타	• 남측에 커넬웨이(개천)가 위치하여 우기 또는 집중호우, 천재지변 등에 의해 개천 범람 시 상가, 주차장 등 건물 내부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계획되어진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 공지 등	• 단지 내에는 공개공지가 설치되며, 해당 면적에 대하여 구분 및 분할, 소유 및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본 단지 내 설치되는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 공간으로 일정 이상의 물건을 적치 또는 점유 및 영업행위를 하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울타리, 담장, 출입구 폐쇄 등) 설치, 공개공지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훼손, 임의 시설물 설치 등 공개공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동측 구간에 공개공지가 설치되며, 공개공지와 인접한 호실 및 저층부 호실은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에는 휴게시설인 식재공간, 앉은벽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공개공지와 인접한 호실 및 저층부 호실은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건축물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주변 도로	• 단지의 주변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폭:약 50m) 도로는 차도 및 보행 가능한 보도(자전거도로 포함)가 설치됩니다. • 단지 남측에는 커넬웨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 단지 북측(폭:약 20m) 도로는 차도 및 보행 가능한 보도가 설치됩니다. • 단지 주변 동측 도로는 경사가 있으며, 해당 도로 이용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호실 및 저층부 호실은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하여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 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주차구획, 주차 진출입구, 자전거주차장 등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인접 대지	• 단지 동측에는 50m 도로 맞은편으로 약 41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약 28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약 27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과 대형마트가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20m 도로 맞은편으로 약 37층 규모의 아파트 및 상가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지하철 7호선 공사가 예정되어있으며, 추후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조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남동측 코너구간에는 커넬웨이로 진입하는 계단 및 전망데크가 조성되어 있으며, 전망데크와의 경계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사 중 협의에 따라 철거될 수 있습니다.
	대지경계	• 단지 동측에는 인접대지간 레벨차이로 인한 옹벽 또는 난간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은 지하1층의 외벽은 커넬웨이와 접하여 형성되며, 지상1층에서 계단 등을 이용하여 커넬웨이로 접근 가능합니다. •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본 단지와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간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옹벽, 화단 등의 구간 및 높이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대지외의 레벨 관계에 의하여 일부 출입구 계단 및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배치	• 단지 내 설치되는 운동시설,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조경, 공개공지 등 시설물에 인접한 호실 및 저층부 호실 일부는 시설물 및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소음발생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부분과 인접한 호실 및 저층부 호실은 해충침입, 악취발생, 환기, 채광 및 조망 불량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과 제연을 위한 시설물(DRY AREA, 배기구 등)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쓰레기이송설비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및 인접한 호실은 소음 및 악취, 조명 등에 의해 사생활권 및 환경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필로티 상부의 호실은 외부 통행에 의한 간섭 및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우려와 필로티 등 외부에 노출되어 저층부로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층 피난통로(Sky Bridge) 설치로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계약하시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생활권 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세대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및 공조기, 휴게공간, 놀이터, 분리수거장 등이 근접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 101동 서측에 면한 일부세대는 인접건물(현대썬앤빌오피스텔) 창문과 근접하여 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동 계약자는 사전 검토하시고 계약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이의를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세대는 지상 주차 및 주차램프로 인해 소음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각동 저층부 세대는 2층 바닥에 상가 실외기 설치에 따른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표시 된 실외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 옥탑층 및 측벽에는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 구조물(오피스텔에 한함), 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피뢰침, 경관조명 및 시행자 또는 시공사 BI 사인물 등이 설치되거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 호실 또는 최상층 호실은 소음, 눈부심, 환경적 영향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설물로 인해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전체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	• 단지 환경디자인 개선을 위해 주동 및 공용부 입면 일부 구간에 재료(유리 포함)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및 설계상 일부 시각적 간섭 및 공용시설 조명에 의해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오피스텔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색상, 옥상장식물,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디자인,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담장, DA, 옹벽 등), 조경디자인(식재계획, 조경시설물 위치 및 디자인 등), 단지 사인 및 조명(단지 BI사인물 포함), 주차장 구조체 공법(DECK PLATE 등) 등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공법 등이 부위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주동 저층부 3개층(통로벽면과 계단실, 공용홀 제외)은 별도마감이 적용되며, 지하주차장 외부 노출데크 벽면, 단지 외곽 옹벽, 단지내 단차 부위, DA 등 외부시설물,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부위는 도장 또는 뿜칠 혼합마감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포장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출입구	• 본 단지 북측에 주출입구 1개소(보행자 및 차량 공용)의 단지 출입구가 설치되며, 단지 특성상 오피스텔 입주자와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및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 하여야합니다. • 본 단지 보행자 및 차량 공용 출입구의 보행로와 차도 간 경계부에는 차량 진입 방지 및 안전을 위한 볼라드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문주는 북측 주출입구에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디자인 및 규모,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동선	• 각 주동의 지상1층 출입구는 외부 보도 또는 상가 내부 보도에 면하여 있으며, 그로 인하여 외부인의 접근이 가능하여 보안상 취약할 수 있으나, 본 단지의 설계 특성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도는 상가 입주자 및 이용자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상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단지의 설계 특성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상의 도로(차도, 보도)는 긴급 및 서비스(이삿짐, 소방차량, 쓰레기차량 등) 차량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보도 및 차도)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비상시 소방차 정차 공간이 설치되며, 위치 이동 및 제거할 수 없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동측 일부에는 지상2층과 연결되는 계단실이 설치되며, 보안 등을 고려하여 비상시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동 출입구	• 동 출입구(필로티 포함)(추가)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폭, 높이)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동 출입구의 입접호실은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 인근 호실 및 저층부 호실은 입주민의 통행, 현관 조명, 단지 내 조명 등으로 인하여 소음, 눈부심, 환경적 영향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는 지상1층 및 지하1층에 오피스텔 및 부대복리시설 주출입구 인근에 설치되고 오피스텔 및 상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인택배 보관소	• 무인택배보관소는 지상1층 출입구 인근에 동별 1개소(총 3개소) 설치하며 택배함 수량은 전체 호실수의 15% 이하로 설치됩니다. • 무인택배보관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상 1층 지상주차장 인근에 오피스텔 및 상가공용으로 1개소가 설치됩니다. • 재활용품보관시설은 지하1층 101동과 102동 사이에 오피스텔 및 상가 공용으로 설치되며, 인접호실 및 저층부 호실은 소음 및 진동, 냄새, 해충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재활용품 보관소 이용에 관련하여 필요시 입주 후 관리주체(관리위원회) 및 관리업체 간의 협의에 따라 사용 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쓰레기 자동이송설비 설치 구역으로 단지 서측에 해당 설비(크린넷)가 설치되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필히 해당 설비를 통해 배출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자동이송설비 사용에 따른 사용 및 유지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쓰레기 자동이송설비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단지	공용부 · 계단실 · 엘리베이터 홀 등	• 각 동의 계단실의 형태는 전용면적이 동일하더라도 동 형태에 따라 설비PD,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형태 및 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해당 동에 따라 각각 다르고, 외부에 면하는 창에는 자동폐쇄장치 또는 배연창, 소방관진입창 등이 설치되어 수동으로 개폐가 불가하거나 개폐시 사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동별 4대(일반용 1대, 피난용 2대, 비상용 1대/장애인 겸용)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피난용 엘리베이터와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제연실로 구성되어 항상 닫혀있는 구조의 방화문이 설치되며, 입주 후 사용상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임의로 출입문을 상시개방, 제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법규 위반시 입주자가 원상복구 등을 하여야 하고 별도의 과태료나 처벌 등 법적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모형 및 도서를 통하여 엘리베이터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층의 복도 및 홀 등의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상20층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이 각 동별 2개소가 설치되며, 상부층에서 하부층으로 이동시 피난안전구역을 통하여 이동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평상시 계단 이용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20층(PIT층 포함) 및 옥탑층에는 수조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부 및 하부의 인접 호실은 소음 및 진동, 냄새, 해충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탑지붕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며, 평상시 이용을 금지합니다. • 옥상 및 옥탑으로 나가는 계단실의 출입문은 보안 및 안전을 위하여 평상시에는 열리지 않고 비상시에만 열리도록 비상개폐장치가 설치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개폐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로비, 승강기 홀, 복도 등 공용공간은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 본 건물은 복합시설로 지상1층 및 지하1층~지하3층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용도별로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원활한 교통통제 및 운영을 위하여 혼용하여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건물은 복합시설로 단지 주차장 설계 및 운영 계획에 따라 타용도와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타용도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복합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복합시설로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각 용도별 계획주차대수의 설치면적으로 배분되었으며, 사용상 편의를 위하여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지상 1층 및 지하2~3층은 오피스텔 용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개별적인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529대의 112.8%%인 597대로 계획하였습니다. • 단지 내 지하1층 주차관제설비는 타용도 시설의 입주자 및 이용자와 공용으로 이용합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 동의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평면 계획에 따라 주차대수의 배분은 주동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 또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에 계획된 창고는 주차장에 부속된 공용창고로 입주민 창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공용부 통로 공간, 계단실은 비난방 · 비단열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 확보를 위하여 일부 기둥, 보와 같은 구조체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높이 2.7m 차량은 지하1층에만 진출입이 가능하며, 높이 2.3m 미만의 차량은 전 층 출입이 가능하오니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차공간은 높이 2.3m 미만(일부 구간은 2.1m 미만)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며, 일부구간은 건축물의 구조 및 기계, 전기시설로 인하여 천정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PIT 등의 공간에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을 위한 각종 설비 배관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차량불빛,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설비	• 옥상 또는 옥탑에 태양광 구조물, 위성 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피뢰침, 항공장애 표시등(협의에 따름)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또는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는 전문업체의 검토를 통해 적정한 위치에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소음발생,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및 지상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제연실 포함), 제연 및 환기용 DA탑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인접호실의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복합시설로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중앙감시장비 (홈네트워크, 원격검침, 주차관제, 비상벨, CCTV, HEAD END, 태양광발전, 전기차 충전설비, 승강기 감시반 등)는 지상1층 방재실에 각 시스템별로 통합 구성합니다. • 본 단지는 복합시설로 지상2층 및 상가 지붕에 오피스텔 및 상가용 냉각탑, 실외기 등 설비시설이 설치되며, 그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배관, 덕트 등)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 및 피트공간을 공용 사용하며 피트의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점검구는 설비공사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지역냉난방배관 등의 인입위치 배선위치 및 우, 오수배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피난안전구역, 최상층 소화펌프실, 제연휀룸,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의 경우 공기 미순환 등으로 인해, E/V홀 내부 및 지하층으로 연결된 계단실, 지하주차장 외벽 및 구조물 등에 결로 및 습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A	• 단지 내 공개공지, 조경 식재구간, 지상1층 오피스텔 주출입구 인근에 지하주차장 및 기계/전기실 등의 환기 및 제연을 위한 DA(환기탑)이 설치되며, 인접한 시설물 또는 인접호실 및 저층부 호실은 소음 및 진동, 냄새, 풍압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홈네트워크 등 단지 내 공용설비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비용은 입주 후 관리 규약에 따릅니다.
	이사 시 유의사항	• 입주 시 단지 내 보차도 바닥 마감, 조경, 호실의 위치 및 층수, 창호형태 및 크기, 평면 형태, 입면 장식, 돌출발코니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호실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여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호실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의 제원에 따라 운반 가능한 이삿짐의 크기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대복리 시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부대복리시설)은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이며, 용도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등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 재활용품보관시설, 자전거 보관대, 어린이 보호차량 승하차 공간 등이 계획되었으며, 복리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일체의 운영 및 보안, 유지 관리는 입주민 자치적으로 하여야합니다. •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은 오피스텔의 입주자를 위한 입주민공동시설로써 자치관리위원회 및 관리업체 간 협의에 따라 타 용도의 입주자 및 이용자의 이용에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 시설물의 설치로 인접호실 및 저층부 호실은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눈부심, 냄새, 해충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냉방 실외기, 환기시설 등은 해당시설 외부 또는 외기를 향하여 설치되며, 인접호실 및 저층부 호실은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피트니스센터는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호실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지상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호실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복합시설 특성상 근린생활시설과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업체의 선정은 각 용도별 자치관리위원회 협의에 따라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 피트니스센터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에서 시공하며, 가구 및 가전, 소모집기 및 비품은 별도 제공되지 않으므로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합니다. • 어린이 놀이터는 지상2층 101동과 102동 사이에 계획되어 있으며, 호실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차량 승하차 공간은 지상1층 지상주차장 내 설치되며, 인접 호실 및 저층부 호실은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 보호차량 승하차 공간 어린이들의 통학차량 이용시 승하차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계획되었으며, 이용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은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지상20층에는 각 주동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설치되며, 평소 휴게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나 비상시 피난시설로 이용되므로 피난에 방해가 되는 시설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20층에 설치되는 브릿지의 사용시 과도한 하중 및 진동 발생시설 설치, 다수의 모임 등은 브릿지의 구조 및 안전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무리한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상20층에 설치되는 브릿지의 사용 용도는 자치관리위원회 및 관리업체간 협의에 따라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공개공지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으로 대체되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설치 또는 미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 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지하1층 및 지상1층에 설치되며, 시설 이용자 및 입점업종에 따른 조명, 소음,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인접호실 및 저층부 호실은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냄새, 해충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 유의사항 (오피스텔 단위호실 : 건축, 전기, 설비, 인테리어 관련사항)

구 분		내 용
단위 호실	마감공사	• 호실 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제작품, 마루, 타일 등)은 견본주택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 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 생산 자재(타일, 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단, 일부 수입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KS기준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제품 생산기준이 KS기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타일 나누기(현관, 욕실, 다용도실 등 타일이 시공된 부위)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일자, 생산공장(지)에 따라 이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다용도실, 화장실(샤워부스 포함),현관 등의 단차 및 타일 줄눈의 모양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호실간 벽 등 단열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타입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 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호실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호실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 및 호실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1(거실) 및 침실 등의 우물천장을 제외한 천장고는 2.4m이며, 실시공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전열교환기, FCU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천정의 올림공간(우물천정)의 천정고는 천장 내부의 해당 호실 및 상부층 호실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 또는 확대 되어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해당 호실 및 상부층 호실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 또는 확대 되어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실1(거실)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유상옵션 포함) 부위는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쿨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레일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천장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설치되며 견본주택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바닥에 층간소음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오피스텔의 특성상 층간, 호실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호실 내 실1(거실) 아트월(유상옵션 포함)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벽체에 고정할 시에는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유니트와 상이하게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기본제공되는 가전제품의 색상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되며, 색상을 선택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기본제공되는 세탁기, 건조기는 올인원컨트롤이 불가한 제품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인조석의 경우, 재료의 접합 연결부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고,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욕실 천정 마감재 및 점검구 규격,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2(부부욕실)에 시공된 락패널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도면 및 견본주택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호실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욕실 뒷샤반의 깊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호실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로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층 및 그 하부층은 구성이 상이하여 이로 인한 소음 및 각종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펜트하우스 욕실에 창호가 설치된 일부 호실은 결로 발생 우려가 있어 환기 등 관리가 필요하며, 주야간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위치에 따라 일부 결로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용상 고려(환기 등)가 필요합니다. • 호실 내 현관 3연동 슬라이딩 중문은 타입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시공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벽과 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강마루와 엔지니어스톤, 바닥타일(유상옵션 포함)이 만나는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될 수 있으며, 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76타입은 84B타입과 동일한 인테리어 컨셉으로 시공되나 가구장등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시 광고물 및 모형을 참조바랍니다. • 76타입은 주방 독립형 후드가 1개소 타입으로 시공됨으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A타입 주방 레이아웃 기본형 선택시 식탁조명은 원형 직부등이 설치되며, 유상옵션 와이드형 주방레이아웃 선택시 팬던트 조명이 설치됩니다. • 211타입의 호실 내 인테리어 마감은 설치되지 아니하며, 입주자가 별도 마감공사를 하여야하므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부근 천장내에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그로 인해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또한 자동식소화기 및 점검구의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구조 변경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된 사항을 계약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단위호실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기사항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있는 경우, 인허가청 및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인정하여 설계변경 또는 타사 자재 제조사 시공 기준에 따릅니다. • 피난방향에 따른 현관문 개폐방향은 좌우 호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계약시 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공사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주방 상/하부장, 원센반입 DADA 제품이며, 그 외 제품 모든 가구는 국내제작 가구이오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주방 상부장 하부 원센반입 디테일이나 부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 부위가 발생(호실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주방가구 및 신발장, 붙박이장 등의 가구 뒷면 및 바닥, 천정에는 바닥마감재 및 벽지, 천정지 등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및 락판넬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호실 내 설치되는 가구 악세서리, 힌지 등의 가구철물은 제품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주방 하부장 상판에 매립형 콘센트는 주방 옵션과 무관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매립형 콘센트 주변에 물사용이 제한되거나 사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76타입 주방가구는 상/하부장 측면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될 수 있으며, 방습장의 위치가 변경되어 방습이 노출될 수 있으며, 서랍장의 사이즈가 축소되어 설치됨을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등의 설치공간계획은 기본제공되는 가전제품 사이즈 기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 기본 설치공간 크기의 차이로 인해 출 되거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반드시 실제 크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호실 내 주방의 기본사양 가전류 외 고용량 가전제품(전기인덕션 등)의 설치는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별도 설치하고자 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세대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 욕실, 현관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 본 단지는 오피스텔로 발코니가 아닌 다용도실이 설치되며, 해당 공간의 바닥면적은 관련 법규에 따라 호실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 실2(안방) 전면에 설치된 다용도실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물 및 청소가 불가하고 청소수전이 미설치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2(안방) 전면에 설치된 다용도실의 물 사용 또는 청소 등으로 인한 하부층 누수 발생시 그에 따른 하자보수는 원인을 제공한 입주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난시설	• 호실 내 또는 공용공간에 설치되는 소방관 진입창 및 배연창, 하향식 피난구 관련 법규에 따라 화재 발생시 대피 및 소화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또는 공간으로 일상생활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 후 임의 훼손, 변경 및 제거, 물건적재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법규 위반시 입주자가 원상복구 등을 하여야 하고 별도의 과태료나 처벌 등 법적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20층 이하(동별 및 호실별 설치 유무 및 층수와 위치는 상이할 수 있음) 호실별로 다용도실 창호 또는 주방 창호등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됩니다.(101동 5호라인 76타입 다용도실창/102동 1호라인 76타입 다용도실창 및 5호라인 76타입 주방창/103동 다용도실창) • 호실 내 소방관 진입창은 관련 법규 기준에 따라 정중앙에 폭 20cm인 적색 역삼각형의 외부 식별표기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조망 및 미관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소방관 진입창에 설치되는 외부 식별표기 등은 입주 후 개별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소방관 진입창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외부 식별표기가 설치되어 입주 후 임의로 수선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실1(거실)의 실(거실)의 창호(동별 및 호실별 설치 유무 및 층수와 위치는 상이할 수 있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배연창이 설치되며 배연창이 설치되는 창호는 임의 수동개폐 및 환기장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설치되는 배연창은 입주 후 개별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9조의3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심의 결과에 따라 완강기는 호실내에 설치되지 아니하며(하향식 피난구로 대체), 지상3~10층의 공용 복도에만 설치됩니다. • 호실 내 실2(안방)(211타입의 경우 실4) 전면 다용도실의 바닥 및 천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내림식 사다리 포함)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다용도실 사용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입주 후 임의 훼손, 변경 및 제거, 물건적재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21층 이상의 호실은 20층의 피난안전구역으로 19층 이하의 호실은 지상2층으로 연결되며 대피가 가능합니다.
	창호공사	• 호실 내 설치되는 창호, 유리 및 손잡이의 형태, 열림 방향, 색상, 제조사 등은 본 공사 시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목문틀 및 시트 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등의 자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설치되는 여닫이창(환기전용)은 안전 및 주변 마감 파손 방지를 위하여 90도 미만으로 개방되며, 구조상 외부 바람 등의 영향으로 여닫이창이 급속하게 열림 또는 닫힘에 따른 이용자와의 충돌 및 손끼임 등의 부상과 창호의 파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창호 개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호실(지상20층 이하 84A 및 84B 타입 : 다용도실 창호 / 76 타입 : 다용도실 창호 또는 주방 창호)의 여닫이 단창에는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며, 해당 창의 유리는 관련 법규 기준에 따라 비상시 유리를 파괴하고 소방관이 진입이 가능하도록 복층유리로 시공되어지므로 평소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호실 및 공용부 복도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 부분의 난간 높이는 80cm이하로 적용되었습니다.
	옥외공간	• 최상층 호실과 하부층과의 바닥면적차이로 인하여 형성되는 외부공간(이하 옥상 외부공간)은 공용공간으로써 계약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공간이나, 입주 후 구조 및 사용 편의상 해당 외부공간이 면한 해당 층 호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본 청약의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호실은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외부공간을 이용하는 해당 층 호실 입주자는 해당 외부공간을 내부공간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호실을 통하여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옥상 외부공간에는 동파발생 등에 따라 별도 수전을 설치하지 않으며, 입주 후 임의로 수전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하자보수는 입주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외부공간은 본 공사 시 건축평면 및 입면형태에 따라 해당 외부공간의 형태가 변경되거나 바닥의 단차, 난간, 배수처리 방법은 본 공사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외부공간은 외측에 직접 노출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을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나 통풍 및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외부공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빗물이나 생활용수에 의하여 하부 호실에 일부 선홈통 설치 및 소음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외부공간의 외부 마감재 설치 유무에 따라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어 해당 옥상 외부공간의 면적이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옥상 외부공간의 누수 발생시 공용공간으로 관리규약에 따라 보수를 하여야 하나, 옥상 외부공간을 이용하는 해당 층 호실의 사용패턴, 시설물 임의 설치, 개보수 등으로 인한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보수 및 하자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호실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비공사	• 당 사업부지는 지역난방 설치 의무지역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난방 열원을 이용하여 중앙공급식 냉방, 난방설비가 설치됩니다. 그로 인해 냉매배관 및 실외기실이 없습니다. • 다용도실에는 전열교환기, 하향식 피난사다리등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등에 전열교환기, 덕트, 스프링클러 배관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임의로 철거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호실 내 다용도실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 되었으며, 물 사용시 배수가 불가하거나, 하부층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호실 내 배수용 선홈통은 다용도실, 세탁실 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배관점검구 설치를 위해 팬코일유니트 및 자동식소화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팬코일유니트-각 개소마다 1개소 설치, 자동식소화기 호실별 1개소 설치) • 단위호실의 환기시스템은 견본유니트에 설치된 전열교환장치 또는 동등이상의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부욕실에 양변기 및 샤워부스의 배기장치는 동시 작동되며, 설치위치 및 사양은 변경될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양변기는 비데 일체형 양변기로 비데는 방수가 되지 않으며,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물내림이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단위호실에는 가스공급이 되지 않으며, 입주자 개별적으로 설치가 불가하니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 내 천장속에는 공동사용을 위한 설비, 전기, 통신 등의 시설물이 관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훼손 및 점검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설치는 지양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76, 84A, 84B TYPE의 단위호실 내 천장형 팬코일유니트는 냉방전용이며, 각 실별 기본제공(호실별 총 4개소)됩니다. 또한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됩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211TYPE의 경우 단위호실 내 천장형 냉난방전용 팬코일 유니트가 설치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76,84A,B TYPE은 단위호실의 난방은 지역열원을 이용한 바닥난방 방식입니다. 단, 공용욕실 욕조, 부부욕실 샤워부스, 주방가구 하부 등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211TYPE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단위호실 내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호실의 일부 부분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천장내부에 상부층용 급수, 급탕 분배기가 설치됩니다. • 호실 내 손빨래 수전 및 다용도실 수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호실 주방 및 욕실 내 배기는 직렬배기방식으로 인하여 설치되며, 그로인해 일부 다용도실등에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별 냉난방 사용요금은 개별계량기에 의하여 부과됩니다. • 단위호실용 호실 열교환기는 공용PD 내 설치됩니다. 설치위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실별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매립배관 위치, 호실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호 및 외기노출벽면 마감재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공사	• 견본유니트 내 설치된 전기기구(홈네트워크,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등)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전기분전반/통신단자함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방공사	• 견본유니트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성능위주설계 심의(소방)에 따라 각 시설 및 각 호실의 내, 외부에는 공용의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유상 옵션	공통사항	• 각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및 선택제에 따라 설치되는 등기구의 위치 및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VAT 별도)

구 분	감리회사명	감리 금액	비고
건축, 토목, 기계	㈜충일건축사사무소	₩1,383,300,000원	
전기, 소방	㈜정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1,065,000,000원	
통신	㈜다우티이씨	₩35,000,000원	

■ 사업주체 현황

구 분	회 사 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분양사업자 겸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0111-1714818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청라플러스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6(청라동)	120111-1148057
시공사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110111-0327555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레프만홀딩스	경기도 평택시 세교6로 46, 122동 비 106호(세교동, 힐스테이트 평택)	284111-0160758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등 록 업 자 : ㈜하나자산신탁 • 등 록 번 호 : 서울 080007 • 사 업 방 식 : 관리형토지신탁
• 공급 대상물의 소재지, 지목, 용도, 규모
①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7-11 ② 지목 - 대 ③ 용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④ 규모 - 지하 3층 ~ 지하 1층(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근린생활시설 등) / 지상 1층(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옥상 조경) / 101동 지상 3층 ~ 지상 19층, 지상 21층 ~ 지상 36층(오피스텔) / 102동 지상 3층 ~ 지상 19층, 지상 21층 ~ 지상 43층(오피스텔) / 103동 지상 3층 ~ 지상 19층, 지상 21층 ~ 지상 37층(오피스텔)
※ 지상 20층(피난안전구역/기계실/연결통로), 옥탑 1층 ~ 옥탑 3층(기계/전기실, 고가수조)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 시 개별등기 • 시공업체의 명칭과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의 명칭 : 분양광고 참조.
• 공급대금의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명칭 및 등록사업자와의 관계 : 분양광고 참조.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회사의 명칭 : 분양광고 참조.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6 (청라동 1-1335) • 분양문의 : 032-582-8881

■ 사이버 견본주택(홈페이지) 및 위치
• 홈페이지 : www.청라더리브티아모까사.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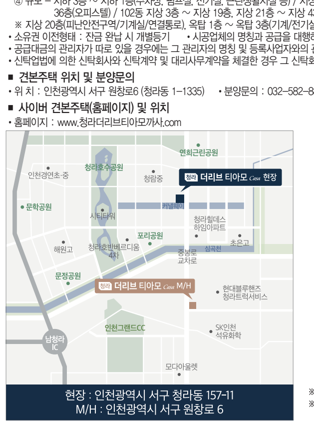

현장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7-11
M/H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6

청라 더리브 티아모 Casa

032.582.8881

오피스텔 523실 | 76㎡, 84A·B㎡

시행위탁 청라플러스 시공 SGC 이테크건설

※ 홈페이지 및 분양, 광고에 관한 문의사항은 상기 분양문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